

국제지적재산권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국제중재

2022. 7. 1. | 윤영원 변호사

들어가며

- ➔ 국제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이해
- ➔ 중재조항의 핵심적 요소 이해
- ➔ 지적재산권 관련 중재의 특수성 이해

목차

- I. 국제중재 개관
- II. 국제중재절차의 규범체계
- III. 국제중재절차

I. 국제중재 개관

중재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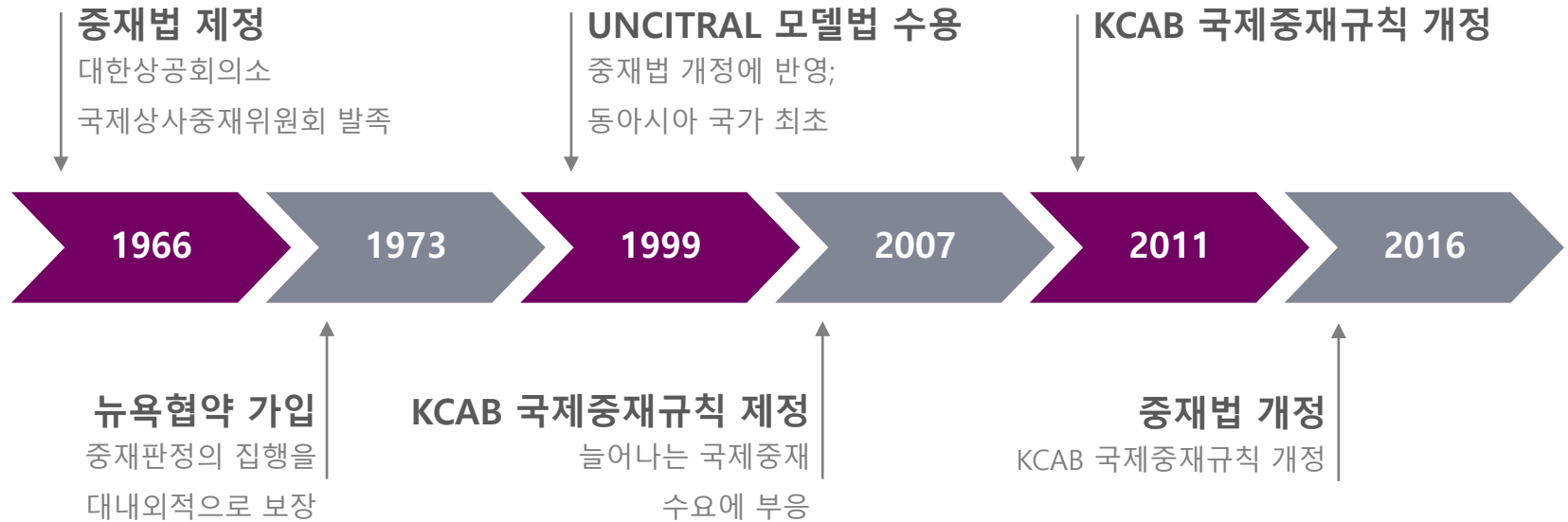
▶ 중재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 중재의 특징

-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
-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정립



우리나라의 중재 이용 현황



✓ **상사중재 이용빈도 증가**

- 2001년 이후 국내기업이 관련된 국제분쟁이 중재로 해결되는 빈도 증가
- 국내기업은 KCAB 및 ICC 중재 상대적으로 선호

✓ **정부 관련 사건의 활용도 증가**

- 현재 각종 WTO 분쟁 사안을 기존 WTO 상설 재판기구가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

중재와 비교되는 개념들

→ 소송 vs 중재

→ 국내중재 vs 국제중재

→ 임의중재 vs 기관중재

국내 소송제도와 비교한 중재의 주요 특징

■ (개별 중재합의 내지 중재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 분	국내 소송제도	국제 중재
절차개시 및 답변	답변서 미제출시 의제자백판결 가능	답변서 제출이 없더라도 의제자백판결 X
재판부의 선정	법원에서 사건 배정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
전체 일정의 확정	매 기일에서 다음 기일 지정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예측 어려움)	초기단계에서 중재재판부가 미리 일정표를 작성하여 회람
문서제출절차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제한적으로만 이용	실무상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용 (영미식 디스커버리 제도 영향)
주장서면 등 제출	서면 및 서증 제출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약 X	서면 및 서증 제출 횟수 2회 정도로 제한

중재의 유형

▶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에 대비되는 개념

- 국제중재의 촉진을 통해 국제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이념
 -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모범중재법
 - 뉴욕협약

▶ 관련 조문

▪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국문)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제중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한다.

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중재절차의 유형

▶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 각종 중재기관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중재
 - 기관중재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중재기관의 행정비용을 절감
 - 기관에 의한 통제에서 벗어나,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중재진행을 도모
 - 비밀보장에 더 유리

▶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행정적 감독 하에 진행되는 중재 (실체적 판단은 중재판정부 권한)
 - 권위 있고 경험이 많은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
 - 해당 중재기관의 신뢰성으로 인하여 판정을 집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 중재기관이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당사자들 입장에서 더 편리
- 임의중재에 비하여 당사자들의 선호도 높음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중재 등의 활용

기업간 저작권(B2B Copyright) 분쟁에서의 활용

- 특허권과 비교하여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분쟁은 기술적 요소가 적음
- 과도한 증거개시(discovery)를 요구하지 않음
- (우리나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적재산권 관련 중재

-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중재를 고려하는 이유

시간과
비용

절차에
대한
선택권

집행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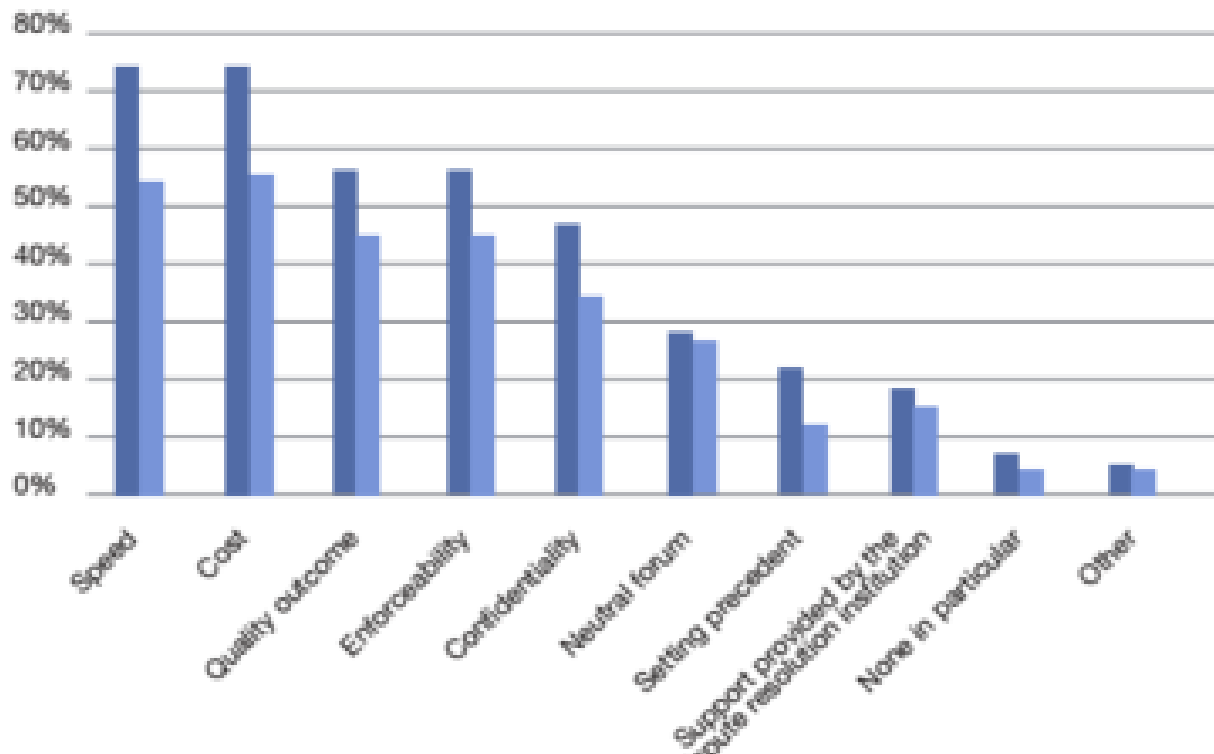
중립적
관할

기술적
전문성

비밀유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중재를 고려하는 이유

Figure 3.19 Respondent's resolution prioriti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or Business-to-Business Digital Copyright and Content-Related Disputes, WIPO]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의 한계

-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짐
- 중재판정 및 중재절차는 비밀유지의 대상이 됨
- 일반예방적 효과가 없음
-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참고: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 특수한 사실상의 쟁점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온 분쟁해결수단

- WIPO의 전문가 결정 규칙(Expert Determination Rules)
- 영국이나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의 유효성이나 범위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공

✓ 전문가 결정의 특징

- 중재보다 빠르게 결정에 이를 수 있고,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도움
- 중재판정부보다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에 덜 구속되어,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초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음



II. 국제중재절차의 규범 체계

중재의 주요 법원(法源)

▶ 법원의 종류

- 뉴욕협약 등 국제조약
- 당사자들의 중재합의 및 이에 따라 적용되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 중재지의 국내법 중 국제중재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령
 - 각국의 중재법은 대개 당사자들의 합의 및 이에 따른 기관 중재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재지

- 관념적으로 정하여지는, 중재절차의 법적 장소(seat of arbitration, place of arbitration)
 - 실제로 구두변론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venue)와 일치할 필요는 없음

중재의 주요 법원(法源)

▶ 뉴욕협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용이하게 함. 일정한 집행거부사유가 없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 승인거부 사유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 방어권의 침해
-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 구속력이 없거나 취소된 중재판정
- 중재가능성 결여
- 공공질서 위반

중재의 주요 법원(法源)

국내중재

➡ 대한민국 '중재법' 적용

국제중재 (중재지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재법' 적용

국제중재 (중재지 외국)

➡ 대한민국에서 승인·집행될 경우 뉴욕협약 적용

➡ 뉴욕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준용

중재의 주요 법원(法源)

▶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9조 (준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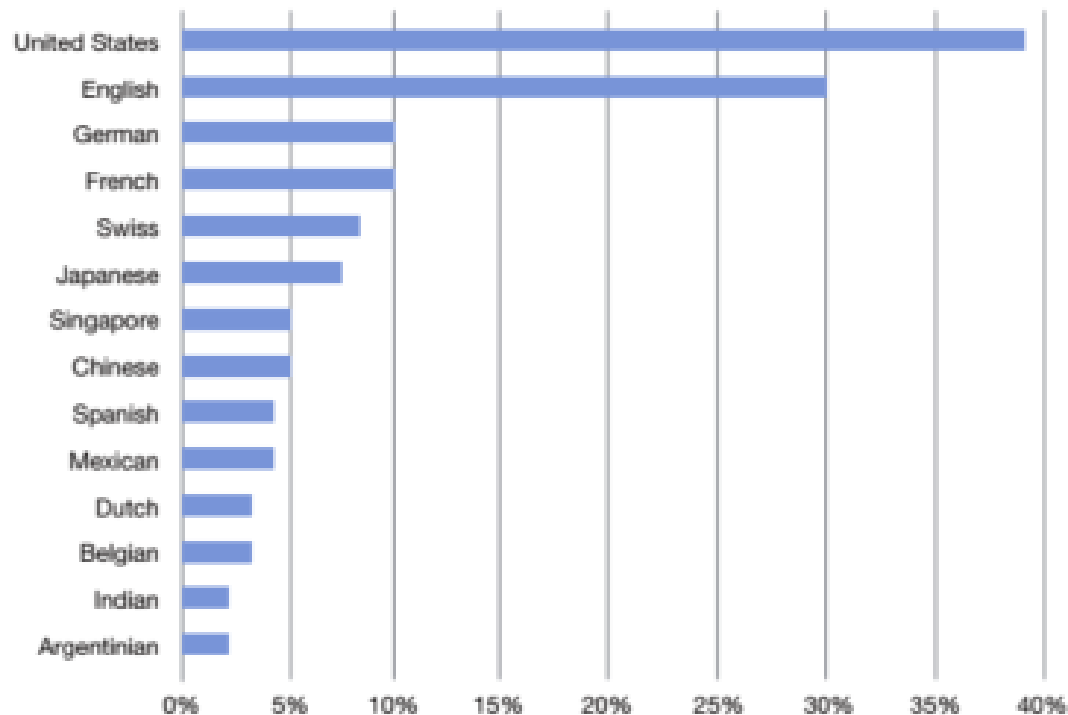
① 당사자는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실체법 및 법원칙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이나 법원칙을 적용한다

▶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중재조항

the assessment of infringement, non-infringement, validity, revocation, sufficiency, priority and amendment with respect to a specific Patent Right that is the subject of the Patent Disput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jurisdiction where such Patent Right in issue has effect**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준거법

Figure 3.21 Most common applicable laws in B2B digital copyright- and content-related contrac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or Business-to-Business Digital Copyright and Content-Related Disputes, WIPO]

중재절차의 기본 원칙 –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

- 당사중재에서 당사자 자치: 중재의 근간
- 절차의 세부사항 자유롭게 합의
- 소송에 비하여 절차적으로 유연

중재합의 - 중재조항과 중재규칙

▶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

-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판정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후합의도 가능하나, 실무상 중재조항을 활용한 사전합의가 일반적임

▶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한다'는 취지의 조약상·계약상 조항
 -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중재인 수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잘못 입안된 중재조항(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의 경우 실무상 빈번히 문제됨
(예: 불확정적선택적 중재조항)

중재합의 - 중재조항과 중재규칙

▶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국문)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1/3]

중재지 [서울 또는 대한민국]

중재에 사용될 언어 [언어]

▶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영문)

Any disput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Seoul/Republic of Korea]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중재조항의 선택적 규정 사항

01 중재의 절차적 요소

- 사전적 조정절차/전문가 결정
- 다수 당사자 중재

02 임시적 처분

- 임시적 처분
- 긴급중재

03 구제수단

- 중재비용의 부담
- 징벌적 손해배상
- 이자

0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 항소
- 국가의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참고: 강제적 중재조항 vs 임의적 중재조항

임의적 중재조항

(Voluntary or optional arbitration clause)

- 분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

강제적 중재조항

(Mandatory or compulsory arbitration clause)

- 어느 당사자이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항
- 근래에 임의적 중재조항보다 선호되는 추세

▶ 대법원 2005. 5. 27. 2005다12452 판결

-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참고: 우리나라 기업이 선호하는 국제중재기관/중재지

2021년도 대한상사중재원 조사

건설, 에너지, 종합상사, 제조업, 게임, 제약바이오 산업 대상 27개사

중재지

싱가포르
런던

중재기관

ICC 국제중재재판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준거법

영국법
미국법
싱가포르법

중재가능성(중재의 대상적격)

▶ 개념

- 중재합의의 대상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인가

▶ 대법원 2018. 11. 29. 2016다18753 판결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가)호에 따르면,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은 중재 대상 분쟁의 성질상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분쟁의 중재가능성은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기준으로 특정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중재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01

독점금지법

02

지적재산권

03

증권거래법

04

도산

05

노동

06

소비자분쟁

지적재산권 분쟁의 중재가능성

EU

부정적

- 등록된 IP 권리의 유효성(validity)나 존재(existence)에 대한 분쟁은 법원의 관할이라고 봄
- 그 이외의 분쟁은 중재가능성 인정

미국

입법적 해결

- 미국의 경우 1983년에 특허법(Patent Act)에서 특허의 유효성(validity)나 침해(infringement)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

우리나라

- 특허권과 같이 그 권리의 발생이 국가기관의 권리설정등록과 같은 행정행위가 요구되는 경우
- 침해여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특허권의 유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분쟁의 중재가능성 - 중재조항

▶ 중재조항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 **any Patent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nd exclusively, definitely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which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 중재판정부의 관할

Where the Patent Dispute concerns a determination as to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 Patent Right, the Parties:

- 1) agree and represent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have jurisdiction** to determine such dispute and matter as between the Dispute Parties;
- 2) shall not challenge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to determine such issues as between them, and shall accept and abide by the arbitration tribunal's finding and represents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as between the Parties;

III. 국제중재절차

국제중재절차 개요

단 계	주요 내용
중재절차개시	-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제출 - 피신청인의 답변서(반대신청 포함) 작성/제출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인 수 및 선정 방식은 당사자간 중재합의 방식에 따름 - 독립성·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유는 중재인 후보가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기피신청 가능
세부절차협의	- 중재절차 진행방향 협의를 위한 예비절차회의(preliminary procedural conference) 개최 - ICC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요지서(Terms of Reference) 작성 - 잠정일정표(provisional timetable) 작성
문서제출절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서류나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는 절차
주장서면 및 증거 제출	-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2회씩 서면제출을 한 후 심리기일을 개최 -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증인진술서, 전문가의견서 함께 제출
심리기일	각 측의 변호사가 모두진술을 한 후 (i) 사실관계 증인, (ii) 기술전문가 또는 손해액 산정 전문가, (iii) 법률 전문가에 대한 신문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심리후주장서면 제출 및 중재판정	- 심리후주장서면(Post-hearing Brief)에서는 심리기일에서 주장된 주요 논점 및 속기록의 관련 부분을 요약하거나 보충 - 양 당사자가 Cost Submission 제출, 중재판정부가 비용분담도 결정(승소 당사자가 패소 당사자로부터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일반적)
중재판정 후 절차	- 승소시: 중재판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각 자산소재지 법원을 통한 집행절차 진행 - 불복시: 중재지 법원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set aside) 제기 가능

중재절차 개시의 효과

▶ 직소금지(直訴禁止)의 효력

▪ 소송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분쟁을 중재절차에 회부하도록 하는 효력

- 중재합의에 불구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상대방은 중재합의를 들어 방소항변을 할 수 있음
- 다만 방소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 전"에 제출되어야 함

▶ 관련 조문

▪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식

- ➔ 중재인 수 및 선정 방식은 당사자 합의에 따름
- ➔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규칙 혹은 중재지의 중재법에 따름

중재인의 자격

자격요건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없음

- 실무상으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조인을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

공정성 · 독립성

공정성과 독립성은 요구됨 (중재법 제13조 등)

- 실무상 1BA 이해상충 지침이 판단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함

IBA 이해상충 지침

Non-waivable Red List

예시:

- 중재인이 어느 당사자의 소속 직원인 경우
- 중재인이 당사자 또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Waivable Red List

예시:

- 중재인이 과거에 해당 사건에 개입한 적이 있는 경우
- 중재인이 현재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Orange List

예시:

- 중재인이 최근 3년 내에 당사자를 대리한 일이 있거나 자문을 제공한 경우
- 중재인이 최근 3년 내에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Green List

예시:

- 중재인이 과거에 관련 쟁점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견을 공표한 경우
- 중재인이 어느 당사자의 대리인과 과거에 공동중재인/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중재인 선정 방법 (3인 중재판정부 기준)

▶ 원칙: 당사자 합의 절차에 의한 선정

- (예시) 양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선정 →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1인의 의장중재인 선정

▶ 예외:

- 위 절차에 따라 중재인이 지명되지 못하는 경우, 제3자가 중재인을 지명
 - 기관중재에 있어서는 해당 상설 중재기관이 지명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
 - 예시(UNCITRAL 중재규칙 및 PCA 중재규칙):
 - 지명권자가 3인 이상의 후보명단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회람
 - 각 당사자가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순위) 및 배제할 후보를 표시하여 지명권자에게 회신
 - 지명권자는 양측 회신을 비교하여 재량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

중재판정부의 결정방식

✓ 법원칙에 따른 판단

- 중재판정부는 독립된 재판기구로서 법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는 그 판단에 구속됨
- 이 점에서 반드시 법원칙에 따를 필요가 없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조정' 절차와는 구별됨

✓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의 보충적 적용

- 준거법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평과 선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음
- 예: UNCITRAL 모델 중재법 제28조 제3항, 대한민국 중재법 제29조 등



중재절차의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 ➔ 중재절차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 당사자 합의
- ➔ 중재기관 중재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기관별 내용이 상이
- ➔ ICC 중재절차의 경우, 중재판정부에 비밀유지명령 권한을 부여
 - * 2019. 1. 1. 이후 내려진 중재판정 원칙적 공개

보전 및 임시적 처분

-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 법원의 보전처분
-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보전 및 임시적 처분

▶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중재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중재절차에서 내리는 다양한 잠정적 처분
 - 1차적 근거: 당사자의 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규칙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내릴 권한을 부여
 -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에 불응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란

▶ 관련 조문

▪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국문)

제32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관련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각 호의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시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미칠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증거의 보전

보전 및 임시적 처분

▶ 법원의 보전처분

▪ 보전처분의 관할이 인정되는 국가의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

- 모범중재법은 법원에 대한 보전처분은 중재합의의 위반이나 포기가 아니며 중재합의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선언
-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제3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문제

▶ 관련 조문

▪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국문)

제32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③ 중재판정부가 관련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또한 적절한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도,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임시조치 또는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그러한 조치를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명한 조치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 위반이나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유한 해당 권한도 유지된다. 그러한 신청의 제기 및 법원이 이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는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중재법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 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보전 및 임시적 처분

▶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 정식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앞서 긴급한 보전처분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로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여 보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긴급중재인 제도를 두고 있는 중개기관의 중재규칙에 합의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실무상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 관련 조문

▪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국문)

제32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④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할 경우 별표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할 수 있다.

별표3.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제1조 긴급처분의 신청

① 이 규칙 제32조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중재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신청 이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이하 "긴급처분"이라 한다)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중재절차에 관한 법원의 관여

✓ 중재합의의 이행강제

-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법원으로 가져간 경우
-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 중재 제기 명령(motion to compel arbitration), 중재합의의 항변(중재법 제9조)

✓ 증거조사에 관한 협조

- 증거조사(제3자의 수중에 있는 문서의 제출, 제3의 증인의 출석을 요구 등)를 위한 조력을 관할법원에 요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승인과 집행의 개념

- **승인**: 중재판정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것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행위
 - 우리나라의 경우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자동승인(중재법 제37조 제1항)
- **집행**: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의 행위

▶ 관련 조문

▪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
정정

중재판정
취소소송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 불복사유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 방어권의 침해
-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 구속력이 없거나 취소된 중재판정
- 중재가능성 결여
- 공공질서 위반

결어

- ➔ 국제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이해
- ➔ 중재조항의 핵심적 요소 이해
- ➔ 지적재산권 관련 중재의 특수성 이해

감사합니다



윤영원 파트너변호사

T. 02 316 1628

E. ywyoon@shinkim.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EL: 02 316 4114 | FAX: 02 756 6226

www.shinkim.com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